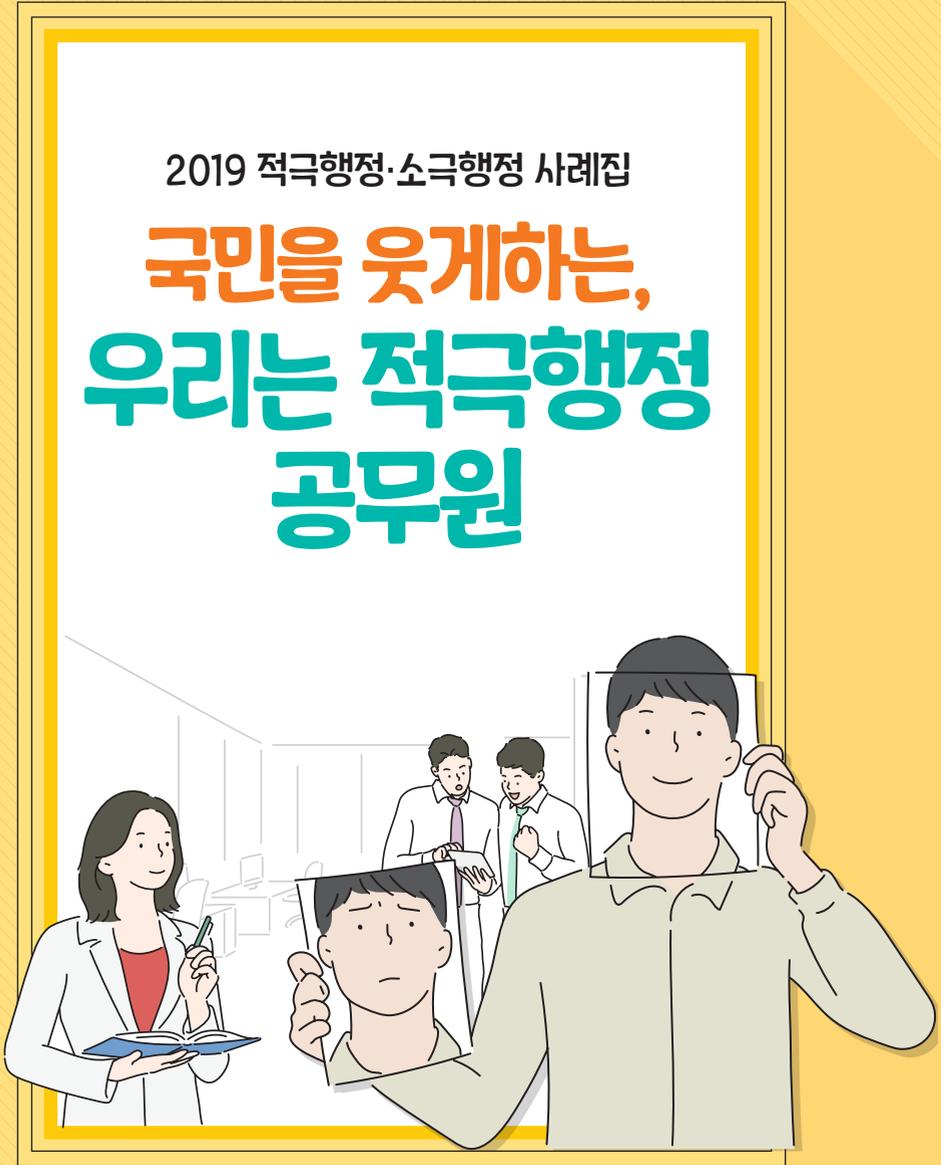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741000-000206-01

2019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집 국민을 웃게하는, 우리는 적극행정 공무원



2019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집

국민을 웃게하는,  
우리는 적극행정  
공무원



행정안전부

## 발간사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처음 공직자로 임명될 때 가슴 속에 새기는 선서문입니다. 공직 초년생 시절 누구나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이 되고자하는 열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감사 혹은 예기치 못하는 불이익에 대한 걱정 등으로 초심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몇몇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라는 국민적 비판과 질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묵묵히 초심을 지키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과 국가만을 바라보고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내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을 때의 그 열망이 공직 내내 지속될 수 있도록, 안심하고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적극행정의 법적기반을 다지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책임관을 두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이를 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대표 사례를 담은 「국민을 웃게 하는, 우리는 적극행정 공무원 - 2019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지방공무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32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행정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방공무원들의 행정을 보고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진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가져오는 공직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는 클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개개인의 적극행정을 향한 노력이 공직사회 변화의 씨앗이 되고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웃는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

# 국민을 웃게하는, 우리는 적극행정 공무원



## Ⅰ 목차

### Part1.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이해하기

① 적극행정은 왜 중요할까요?	08
•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	08
• 적극행정이란?	09
• 왜 적극행정을 실천하지 못할까?	10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방향	11
② 적극행정 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12
• 사전컨설팅	12
• 적극행정 면책	14
• 적극행정 인사상 우대	15
• 법률적 지원	16
③ 소극행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19
• 소극행정의 개념	19
• 소극행정 유형	20
• 소극행정 점검 및 신고	22
• 소극행정 엄정 조치	23

### Part2. 적극행정 사례

① 적극행정 대표사례	26
② 적극행정 지원사례	
• 사전컨설팅 사례	36
• 적극행정 면책사례	42
• 특별승진사례	46

### Part3. 소극행정 사례

① 감사사례	56
② 징계사례	61

부록.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Part

# 1

##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응원합니다

###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이해하기

—  
공직 초년생이라면 누구나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한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오랜 공직생활 동안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적극행정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처음 다짐한 바를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요?

- 1 적극행정은 왜 중요할까요?
- 2 적극행정 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 3 소극행정은 사라져야합니다

# 1

## 적극행정 이래서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

#### ■ 행정환경의 변화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 ■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

헌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또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 근거 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국민들의 높은 기대치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와 달리 국민들은 정부와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2016) \_ 한국행정연구원

공무원의 무사안일에 대한 국민들의 답변



### 적극행정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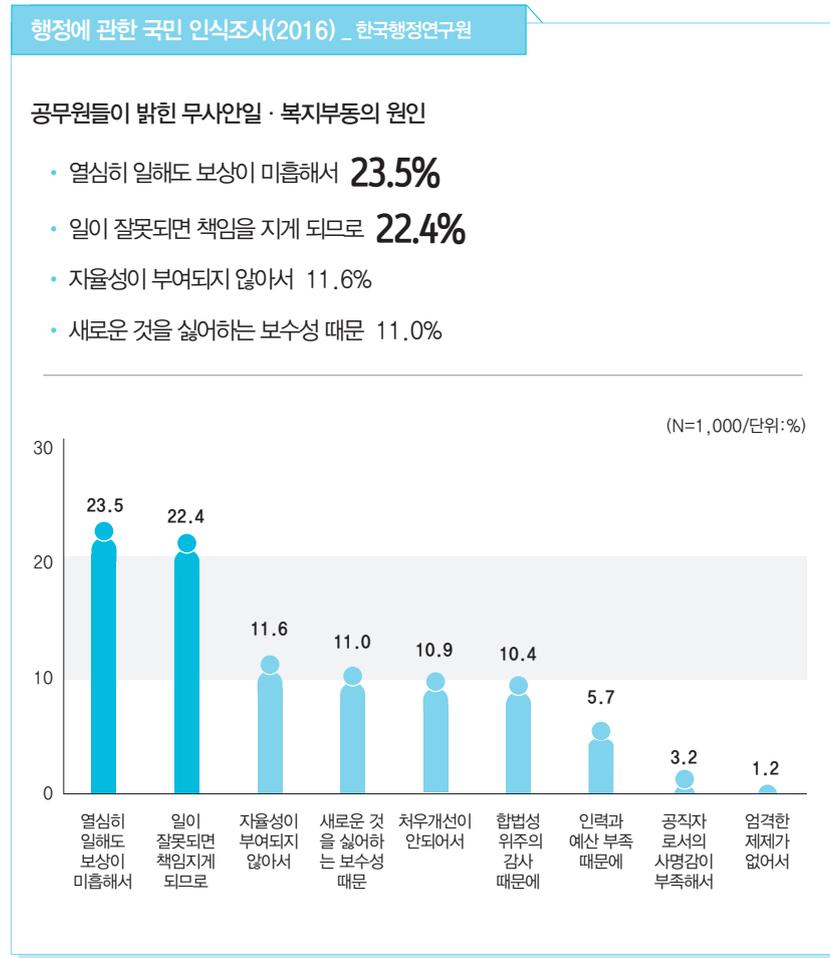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이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선제적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입니다.

#### ⚖️ 근거 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호 "적극행정" 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왜 적극행정을 실천하지 못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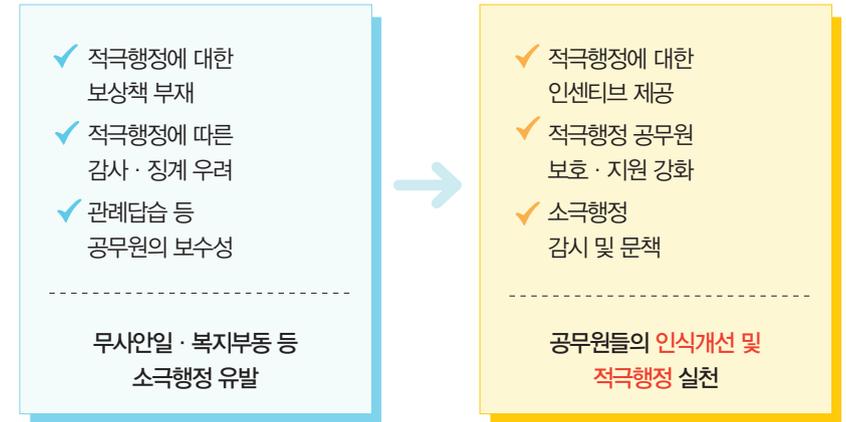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수행하더라도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는 점을 무사안일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 발생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질 우려가 있다는 점 역시 무사안일의 원인이었습니다.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방향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을 극복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민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보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잘못은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관행을 답습하지 않도록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해야 합니다.



## 2 적극행정 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인사상 우대, 법률적 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사전컨설팅 제도

#### ■ 사전컨설팅이란?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규정·지침의 해석 또는 업무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관 내부적으로는 자체감사기구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사전컨설팅을 제공해 줍니다. 기관 외부적으로는 시도 감사기구(시·군·구의 경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감사원에서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사전컨설팅의 효과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결과 사전컨설팅대로 업무 수행시 담당공무원은 징계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별한 사정이란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무원이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 근거 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및 제10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 사전컨설팅 처리 절차

감사원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컨설팅은 시도에서 감사원 또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선 시·도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 시도에서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시도에서 감사원이나 중앙행정기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감사원이나 중앙행정기관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국민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나 자체감사기구, 시·군·구에서 시·도 감사기구로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의 처리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민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도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전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민원인은 시·도지사에게 사전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

## 적극행정 면책

### ■ 적극행정 면책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와 같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 적극행정 면책의 유형

적극행정 면책은 징계 요구 등 면책과 징계등 면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징계 요구 등 면책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감사기구 또는 감사기관에서 제공한 사전컨설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공무원이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경우여야 합니다.

징계등 면제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부과의결 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감사기구 또는 감사부서에서 제공한 사전컨설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적극행정 지원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 근거 규정

- 「감사원법」 제34조의3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16조

### ■ 적극행정 면책 절차

징계 요구 등 면책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면책과 현장면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면책은 실지 감사 종료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면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회가, 정부합동감사의 경우 면책심의회가 면책 여부를 심사합니다.

#### 징계요구 등 면책절차



현장면책의 경우 감사현장에서 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 적극행정 여부를 심사하며, 면책을 조기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 감사 모두 감사단 내부에서 면책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나 기초단체에 대한 시도감사의 경우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 등 면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책절차

를 간소화하는 등 자체감사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징계등 면제에서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 있는 공무원이 징계 대상 행위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 인사위원회는 이를 의무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또한, 징계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ombudsman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적극행정 인사상 우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각 지방자치단체는 반기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마련한 선발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합니다. 선발 대상은 국민추천이나 부서추천을 받은 자, 적극행정 관련 대회 수상자 등이며, 엄격한 공적 심사를 거쳐 다른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됩니다.

#### 선발기준

-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

\*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인사상 우대조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하나 이상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합니다. 인사상 우대조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희망과 적극행정의 성과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별승진부터 교육훈련 우선선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인사상 우대조치 유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

- 특별승진 : 4급 이하 공무원의 1계급 승진 임용
- 특별승급 : 호봉제 적용 공무원의 호봉 1단계 승급
-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1년 단축
-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 가산점평정 시 3점 범위 내에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가점 부여
- 포상휴가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의 하나로 포상휴가 부여
- 기타 희망부서 전보 또는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 법률적 지원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의 신분상·재산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 구상권 행사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재판이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

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 징계절차 또는 소송과정에서의 법률적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받거나 형사 또는 민사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 적극행정 면책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도록 지원합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로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해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있는 경우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합니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원합니다.

한편, 적극행정 공무원이 스스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추천하는 등 변호사 선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지원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3 소극행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적당히 형식만 갖춰 업무를 처리하고,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극행정의 개념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의의 소극행정은 법령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광의의 소극행정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법적 책임은 가벼울 수 있으나, 사회적·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 ⚖️ 근거 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징계기준

## 소극행정 유형

### ■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 판단기준<예시>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
-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 ■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 판단기준<예시>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감독 소홀, 낙장 대응 등의 행태
- 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 ■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 판단기준<예시>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 판단기준<예시>

-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 규정·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하거나,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



## 소극행정 점검 및 신고

소극행정은 공무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해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소극행정 특별 점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방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점검사항은 소극행정을 비롯하여, 규제남용, 진입제한 등입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극행정 중점 점검사항

- 소극행정 : 인허가 지연처리, 인허가·신고수리 간주처리, 건축허가 부적정 보완요청
  - 규제남용 : 보고·신고사항을 승인·허가사항으로 처리
  - 진입제한 : 과도한 실적을 입찰요건으로 하는 신규업체 진입제한
- \* 규제개혁신문고, 국민신문고, 중기음부즈만 건의사항, 권익위 고충처리 마이행 사례 등 활용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목격한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소극행정 민원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 감사부서에서 접수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 소극행정 엄정조치

소극행정 점검 또는 신고의 처리에 따라 공무원의 비위가 소극행정으로 밝혀진 경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엄정한 조치가 실시됩니다. 소극행정 비위는 공무원이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징계사유에 비해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또한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제한기간 또는 승급제한기간을 가산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Part

# 2

## 적극적인 공무원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적극행정 사례

적극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행정을 실천하면  
국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해결하여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공무원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① 적극행정 대표사례

---

② 적극행정 지원사례

- 사전컨설팅 사례
  - 적극행정 면책사례
  - 특별승진사례
-



사례1

# 관련 규제 개선으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사례

경기도 안양시 소재 S사에서는 무인증형전기버스 인공지능(AD) 개발 과정에서 자율주행 실험을 위해 중국 F사의 차량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이 수입차 안전기준 자기인증 요건에 맞지 않아, 일반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실험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의 A 주무관은 '17년 10월, 찾아가는 지방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러한 S사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소관부처에 규제 해소를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주무관은 관련 법령, 자율주행 기술 등을 학습하면서 10여 차례 기업·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자문을 받아 건의내용을 보완하여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에 다시 규제 해소를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관 부처에서 해당 차량의 안전성을 엄격히 확인하여 충분히 안전한 차량이라는 증명과정을 거쳤고 이에 따라 자기인증 면제서가 발급되었습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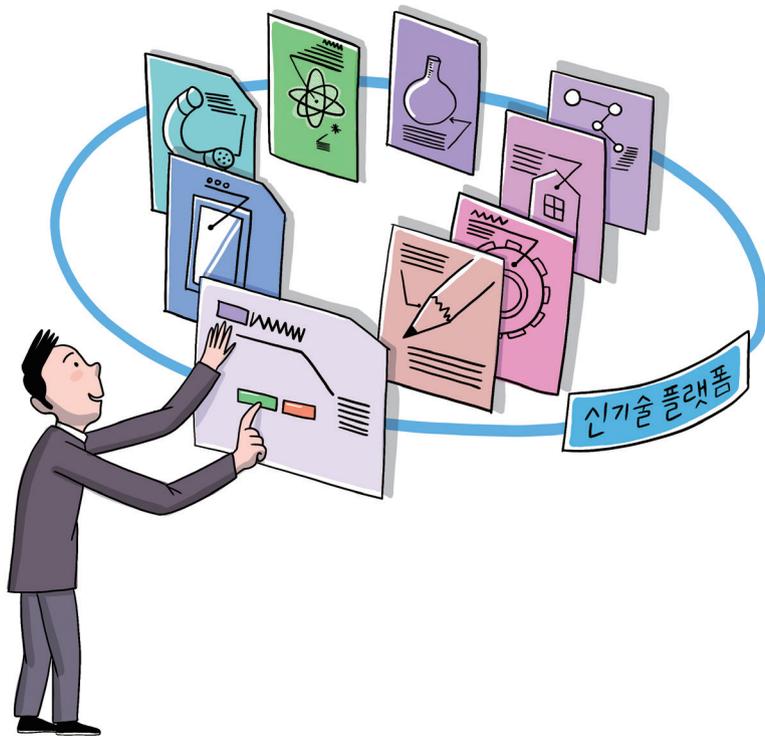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용 수입차량 자기인증 면제('18년 12월)와 국토교통부의 실험용 인공지능 차량 일반도로 임시운행허가('19년 6월)를 통해 자율주행 버스가 서울 월드컵북로 1.1km<sup>2</sup> 구간을 운행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고도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은 연 1,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연 1,000억 원 이상의 매출과 3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50여 개 자율주행 관련 산업군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2

# 신기술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 사례

대구광역시 소재 신기술 보유업체는 신기술을 홍보할 창구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도입에 대한 감사 및 책임 부담으로 인해 신기술 적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신기술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광역시 신기술심사과·감사관실의 A, B, C 주무관은 신기술의 초기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법령검토, 타 시도 사례조사, 건설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전국 최초 신기술 플랫폼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기술 플랫폼은 9개 정부 부처별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신기술과 지역의 특허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신기술 홍보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기술 활용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신기술 도입을 실현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는 신기술 플랫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활용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적극행정으로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신기술 플랫폼은 기업의 신기술 홍보와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도입을 통해 신기술의 활발한 시장 진입에 기여하였습니다.



사례3

# '고요한택시' 도입으로 청각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 사례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은 비장애인들보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업체에 취업하기 어려우며, 택시회사 역시 승객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청각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대중교통과의 A 주무관, B 주무관은 청각장애인의 택시회사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요한택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태블릿을 택시 앞자리와 뒷자리에 배치한 뒤 이를 통해 승객과 기사가 의사소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요한 택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송사업자, 어플리케이션 공급자와 전국 최초로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시행 후 많은 항의전화와 시민들의 편견이 있었으나 담당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읍·면·동 반상회보 등을 통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남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고요한택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청각장애인 7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경주시에도 해당 서비스가 확산되어 총 13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나아가 최근 두 차례 취업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청각장애인이 고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 기회가 확대되었고, 택시회사는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승객들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사회적인 편견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사례4

# 서해5도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사례

서해5도 해역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잦은 기상악화, 군사훈련으로 인한 조업통제, 북방한계선(NLL)과 인접에 따른 반복·야간 조업 금지 등으로 어로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연간 150여 일만 조업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용진군 수산과의 A 주무관은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을 위해 수년 전부터 각계각층에 건의했던 노력을 이어가며, 해양수산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꾸준히 규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용진군의 규제완화 요청과 함께 인천시장(2차례) 및 해양수산부장관(2차례), 여야 국회의원 서해5도 방문 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조업구역 연장 및 야간조업의 부분적 허용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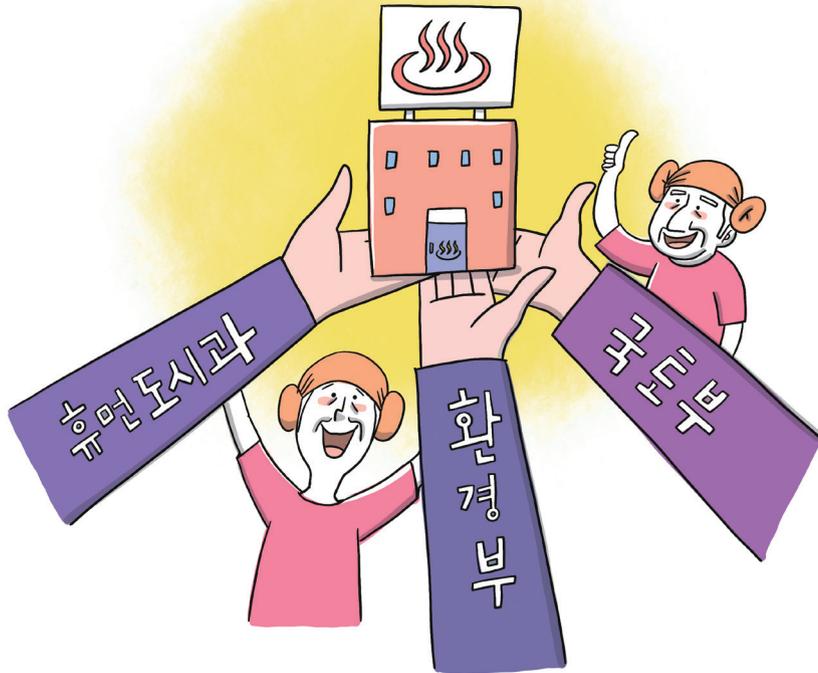
해양수산부에서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하여 서해5도 어장 면적이 확장되었고, 야간조업도 1시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4,000톤의 어획량과 300억 원의 주민 소득이 각각 10% 이상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례5

# 적극행정으로 소외지역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사례

부산 기장군 정관읍 월평마을 인근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대중목욕탕을 건립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주민이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 대중교통으로 40분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은 목욕탕 건립을 강력히 원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개인,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욕탕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지원과의 A 주무관은 월평마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휴먼도시과와 협업하여 2017년 9월부터 환경부, 국토부의 담당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 조례 제정을 위해 시 의원을 설득하고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주민탄원서(343명)를 받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관련 법령 개정과 부산시 조례 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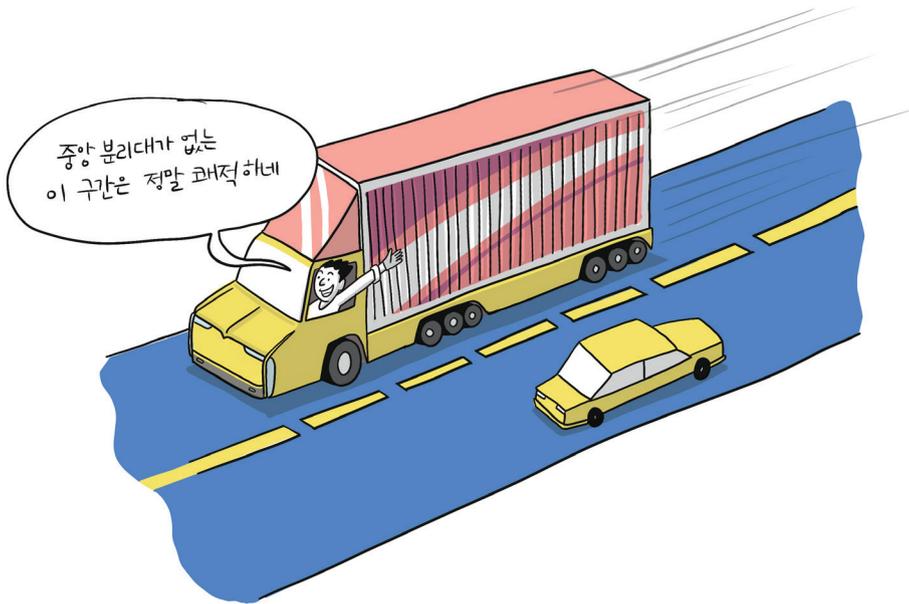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을 지자체에서 설치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1])이 개정되었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목욕장이 건립 중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소외받는 주민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사례6

#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기업불편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 사례

전라남도 영암군에서는 일부 도로구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와 운반차량 운행시간 제한으로 대형 선박구조물의 운송이 제한되어, 선박구조물 제조 및 운송 기업의 수주 물량 확대와 물류비용 절감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도로를 서남권 방향 일반도로와 혼용하고 있어 입주기업 민원과 일반 이용자 안전문제가 서로 충돌하여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요청하였고 정부합동감사단, 영암군 등 관계 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중앙분리대 제거 등을 통해 기업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합동감사단,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경찰서, 한국전력, 기업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앙분리대를 제거하되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주간 운행 시 우회도로 이용 및 교통안전장치 설치 등의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15년 동안 풀지 못했던 대불국가산단 기업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7

# 유연한 행정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사례

전라남도 목포시의 OO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하였으나 아파트 사용승인 검사 전까지 미 개설구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을 이유로 사용승인 검사를 거부할 경우 예정된 아파트 입주시기가 늦어져 입주자들의 집단 불편과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목포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얻은 도로 구간 중 사용승인 전까지 아파트 진·출입에 문제없이 개설 가능한 일부 구간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98조에 따른 부분 공사완료를 공고하고, 아파트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중점 확인 요청하였습니다.

사전컨설팅 결과 차수별로 분할하여 사용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 유연한 행정처리를 통해 주민불편을 예방하였습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주민불편 사전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중 일부 완료된 부분은 준공처리하고 나머지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아파트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의 입주관련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8

# 방치된 국유지를 정비하여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 사례

서울외곽순환도로 주변 한국도로공사 소유 토지가 방치됨에 따라 무단 경작, 쓰레기 투기, 노점상 난립등으로 도시 미관 저해 및 주민 안전이 위협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동구청은 해당 토지 환경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와 논의가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장기 방치된 토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 검토와 관련 기관 협의가 필요하였고 사전컨설팅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안부·인천시·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는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남동구에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하였고 남동구는 해당 부지를 꽃길 조성 사업에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해당부지에 대한 경계 측량·명확화, 불법 점유자 퇴거 등을 시행하고 남동구는 지면 단차 정리 및 꽃길 조성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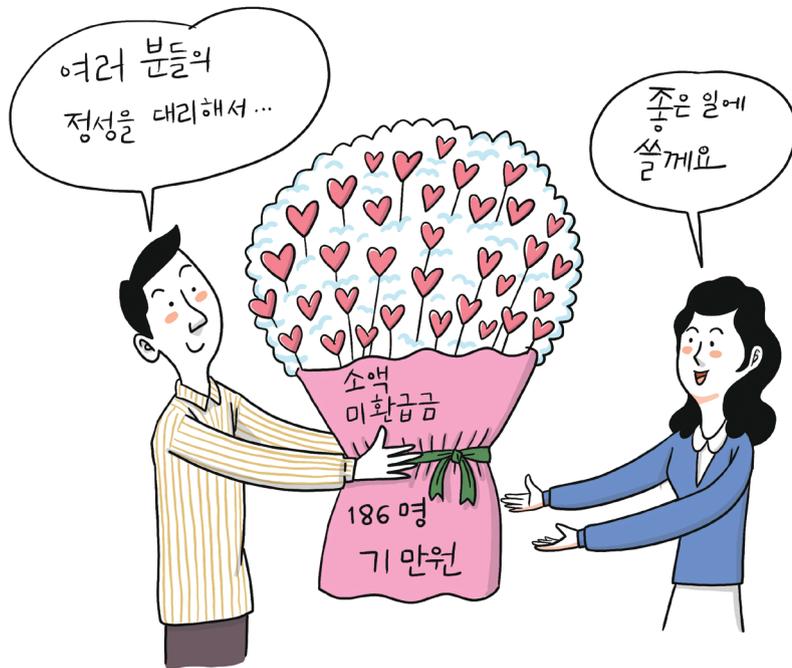
**적극행정!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국유재산을 효과적 활용하고, 도시 미관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9

#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면책하였습니다



## 사례

공무원 A는 매년 상·하반기 미환급금 일제 정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소액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과정에서, 소액환급금 기탁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공(186건)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환급대상자 명의로 지방세 환급금 186건, 71만 원을 기부하였고,

이는 따뜻한 기부문화 확산 및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추진한 공익목적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면책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렇게 면책하였습니다.

소액 환급금 기부는 선의의 행정을 펼치고자 한 취지이며, 환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연계를 추진하여 지방세 미환급금 등을 정리하고자 한 것으로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

환급대상자 명의로 지방세 환급금 186건, 71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여 따뜻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환급통지, 인·허가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업무로 고의 및 중과실이 없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개인정보를 미유출 및 폐기 처분 완료 된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면책 심의결과: 경징계 → 면책



사례10

#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절차 위반 사실이 있지만 면책하였습니다



## 사례

공무원 A는 세출예산 편성과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없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B섬 차도선 접안시설 신규사업에 1억 6,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태풍 복구 중인 타 어항시설의 사업비 감액분 및 잔액분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 편성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태풍 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진한 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태풍 피해 보고가 누락됨에 따라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면책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렇게 면책하였습니다.

구계획 수립 당시 B섬 차도선 접안시설의 하부 피복석 유실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아 피해복구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균열과 침하가 진행되어 피해발생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피해부분이 확장되어 우도마을 30세대 51명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차도선 접안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을 일부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공사가 지연될 경우 교통 불편 등 주민들의 기본 생활 곤란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고,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므로 적극행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면책 심의결과: 경징계 → 면책



사례11

#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으로 수돗물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 사례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취수원 오염을 대비하여 '고도산화(AOP) 정수장'을 도입하고,

또한 소독 냄새 없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한 '염소 분산시설'을 도입하였으며, 취수원의 녹조(조류)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거·억제시설을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질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우리동네 수질개방 사업'을 실시하고 수질을 보증하기 위해 '수돗물 수질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런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방환경연구사에서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특별승진하였습니다.



사례12

# 민원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 사례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부동산 민원 편익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민원을 18편의 에세이와 1편의 소설로 만들고 e-book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민원에세이 e-book 제도를 창안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 제도를 관리·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합격자 자격증을 근무시간 시간이 아닌 때에도 시민과의 약속을 통해 교부하는 '약속형 공인중개사 교부제'를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런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방시설 7급에서 6급으로 특별승진하였습니다.



사례13

# 국방부와 협력하여 숙원사업이던 군부대 이전에 성공하였습니다



## 사례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수십 년간 지지부진하던 군부대 이전 사업을 국방부와 협의하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방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군부대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국방부의 요구에 대해 '이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의점(공공용지 40% 확보)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등 오정 군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적극행정! 이런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방시설 5급에서 4급으로 특별승진하였습니다.



사례14

# 발상의 전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 사례

광명시 테마개발과장으로 임명된 공무원 A는 폐광 후 방치되던 구 시흥 광산에서 산업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스토리와 콘텐츠가 있는 광명동굴만의 테마를 외부 용역 없이 기획하였습니다.

그 결과 40년간 방치되던 폐광을 동굴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광명동굴은 2015년 유료화 개장 후 1년 8개월 만에 관광객 유치 230만 명, 일자리창출 632개, 시세외수입 123억 원, 외국인관광 5만 3,622명, 도농협업을 통한 국산와인 170종 판매로 창조농업 실현,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64개 지자체 및 기관, 우수 관광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물론, 폐광개발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광명동굴과 연계한 국제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성공사례와 개발노하우를 세계로 전파하였습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런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방행정 5급에서 4급으로 특별승진하였습니다.

Part

# 3

##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소극행정에서 시작됩니다

### 소극행정 사례

—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극행정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등 각 유형별 소극행정 및 징계의결 사례를 살펴봅니다.

① 감사 사례

② 징계 사례



## 1. 감사사례 : 업무해태

### 사례1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지연 처리하였습니다

○○광역시는 응급 구조 활동의 개선을 위해 119안전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준공 검사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용역계약서 일반조건에 따르면 용역 완료계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준공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시 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96일이 경과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하는 등 업무를 지연 처리하였고, 그 결과 계약 상대방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초래하였습니다.

#### 결과

**소극행정!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업무지연 처리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의



## 1. 감사사례 : 업무해태

### 사례2

# 지침개정 업무를 방치하여 규제개혁에 역행하였습니다

○○○구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주차위반 차량 견인 중 파손 시 피해구제 방안 마련”과 관련된 내용의 지침을 2017년 3월까지 개정하도록 권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권고 내용을 검토한 후 개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 담당 공무원은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검토 없이 지침 개정 업무를 방치하고 있었고,

그 결과 차량 견인으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 결과

**소극행정!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시정을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정



## 1. 감사사례 : 적당편의

### 사례3

# 소극적 업무처리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됩니다

○○○구는 건축허가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 받고 총 4차례에 걸쳐 적법하다는 내용을 회신하였습니다.

「○○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르면 다른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을 신축건물의 주차장으로 겸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 담당공무원은 민원 내용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민원인에게 건축허가가 위법하지 않다고 그대로 회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실한 민원 처리로 행정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주차공간 난립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 결과

#### 소극행정!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및 민원사항을 조사처리하는데 있어 법령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의



## 1. 감사사례 : 탁상행정

### 사례4

# 안일한 업무처리로 재정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시는 LH 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공사에 대한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시 조례에 따르면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연도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담당공무원은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의 의미를 생산자물가지수 중 '총지수'로 적용하지 않고, '개별지수'로 적용해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인자부담금 13억여 원이 부과되었고,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 등 재정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과

#### 소극행정!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의



## 1. 감사사례 : 관중심행정

### 사례5

# 불필요한 허가 조건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군은 관내 식품공장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요건 이외에 불필요한 사항을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군 담당공무원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마을주민 동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하였고,  
 그 결과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였습니다.

#### 결과

#### 소극행정!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시 주민 동의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요구를 지양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의



## 2. 징계사례 : 적당편의

### 사례1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공무원 A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A는 보존기간이 3년인 민원서류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파쇄한 후 일부만 보관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수입증지의 결손처리에 대하여 문제의식 없이 수수료를 자비로 대납한 후 파쇄 처리하는 등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 소극행정! 이렇게 징계하였습니다!

공무원 A는 자의적으로 민원서류파쇄 처리를 하는 등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감봉 1월



## 2. 징계사례 : 적당편의

### 사례2

# 적당주의는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집니다

공무원 B는 도로 정비공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물품과 다른 저가의 물품이 설치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단일사업의 관급자재를 분할 계약할 수 없음에도 분할 계약을 체결하였고,

미끄럼방지 포장재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품셈과 제경비를 적용 발주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 결과

#### 소극행정! 이렇게 징계하였습니다!

공무원 B는 도로 조성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았으며, “**감봉 1월**”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봉 1월



## 2. 징계사례 : 업무해태

### 사례3

# 법령을 무시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공무원 A는 ‘○○○○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의 입찰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부정당업체 B는 입찰공고한 ‘○○○○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중 업무중첩도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계약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계약 관련 거짓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해당 사실이 밝혀진 후 지체 없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제재 정도나 제재 여부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A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 업체 제대 통보’에도 불구하고 부정당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경고’ 처분만 함으로써 부정당업체B를 제재 처분하지 않는 등 불법혜택을 부여했습니다.

#### 결과

#### 소극행정! 이렇게 징계하였습니다!

공무원 A는 「지방공무원법제 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견책



## 2. 징계사례 : 업무해태

### 사례4

# 축산물 위생업체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공무원 A는 축산물 위생업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위생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19개 업체에 대해 위생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 결과

**소극행정! 이렇게 징계하였습니다!**

공무원 A는 담당업무인 축산물 위생업체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았으며, “**견책**”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견책



## 2. 징계사례 : 업무해태

### 사례5

# 서무·보안업무 및 농지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공무원 A는 B동 주민센터 서무업무 담당이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보안점검표를 당번 근무자와 최종 퇴청자가 직접 작성하게 하지 않고 본인이 일괄 작성하였으며, 보안점검 시간을 실제 점검시간이 아닌 다음날 낮 시간대로 기재하였고, 결재란에 담당자 확인 및 결재권자의 결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안업무 담당자로서 공직자 전시임무카드의 관리등급을 비문에서 평문(대외 비공개)으로 변경하도록 통보받았음에도, 등급 변경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지경작사실 확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타 시·군·구에서 신청한 19건과 동에서 요청한 11건을 처리기한 내에 문서로 통보 또는 접수확인을 하지 않고, 전화 및 전산 프로그램으로만 처리한 사실이 있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 결과

**소극행정! 이렇게 징계하였습니다!**

서무·보안업무 및 농지업무 담당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어 “**감봉 3월**”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봉 3월



## 2. 징계사례 : 업무해태

### 사례6

# 고의적으로 업무량 증가를 회피하였습니다

공무원 A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청문을 실시하고도 농지 소유자들의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처분 발생 대상자들을 확정하지 않음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고, 상급기관에 조치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처분명령 유예 농지 소유자 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민원 발생으로 업무량이 증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처분명령을 하지 않아 유예기간 경과로 해당 필지의 처분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결과

#### 소극행정! 이렇게 징계하였습니다!

공무원 A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명령 유예 농지에 대한 후속조치 태만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았으며, "**정직 1월**"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 1월



## 2. 징계사례 : 업무해태

### 사례7

# 안전업무를 소홀히 하고 위법사항을 장기간 방치하였습니다

공무원 A는 토석채취허가 관련 산지복구 준공업무와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사후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토석 채취로 인해 형성된 암반사면 등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가 우려되었고, 따라서 법면 보호공과 추락방지 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이를 살피지 않고 감사에서 지적되기 전까지 안전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확실한 불법행위를 인지하였고 이후 재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음에도 위법사항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등 실무책임자로서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 결과

#### 소극행정! 이렇게 징계하였습니다!

토석채취허가 관련 산지복구 준공업무와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사후조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업무를 태만히 하여 "**견책**"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견책



사례8

# 본인위주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공무원 A는 시설물관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여름철 냉방기 사용 시기 전까지 시스템 냉방기를 시험 가동 하거나 점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냉방기 고장으로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시민들의 교육에 불편을 끼쳤습니다.

또한 청사 내 환경개선 공사에 있어 설계서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상식적 요구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등

공무원에게 부여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본인 위주의 소극적 업무 처리로 직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결과

견책

**소극행정! 이렇게 징계하였습니다!**

공무원 A는 관리 시설물 내 냉방기 관리 부적정 및 비상식적 업무 처리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았으며, "**견책**"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9

# 한우생산사업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여 농가에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공무원 A는 고품질 한우생산사업 도비보조사업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시간이 촉박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고 다음 연도에도 동일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이유로,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전액 감액을 요구하여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로써 사업 추진을 기다리던 신청 농가들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고, 해당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결과

견책

**소극행정! 이렇게 징계하였습니다!**

공무원 A는 담당업무인 고품질 한우생산사업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았으며, "**견책**"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록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부록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 6, 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2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인 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해당 시·군·구가 소속된 시·도의 감사기구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의 경우(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다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 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 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면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었을 것
- ④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징계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지원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4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등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

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제30018호, 2019. 8.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집

국민을 웃게하는,  
우리는 적극행정  
공무원

---

발 행 처 행정안전부

발 행 일 2019.10.

연 락 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495

디자인 · 기획 디자인크레파스 02-2267-0663

---